

## 〈별표66〉 골절철심제거술(급여)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철심제거술(급여)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의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 분	분 류 항 목	수가코드
사지체내 고정용금속제거술	1.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근막절개 하에 간단히 제거한 경우	N0978
	2.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근막절개 없이 간단히 제거한 경우	N0979
	3. 대퇴골	N0972
	4. 상완골,견갑골	N0973
	5. 전완골,하퇴골	
	5-1. 요골과 척골중 하나,경골과 비골중 하나	N0977
	5-2. 요척골 동시,경비골 동시	N0974
	6.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N0975
	7. 중수골, 중족골, 자골	N0976
	8.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방	N2471
	9.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후방	N2472
	10.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악골내강선고정의제거)	U4971
	11.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제거)	U4972
	12.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 (재건용금속판의제거,악골1/2이상의크기에달한것)	U4973
	13.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 (재건용금속판의제거,악골1/2미만의크기인것)	U4974

-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